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67호 2019. 9. 30(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5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3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71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입안(안) 열람·공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8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55호

##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 9. 30.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지정취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2. 지정내용

- 지정일 : 2019년 9월 30일
- 지정대상 및 범위(붙임 참조)

구 분	현 황	기 지정	추가 지정	비 고
도시공원	137개소	135개소	2개소	* 추가 지정 대상은 금연안내표지판 설치

\* 건강증진과-6547(2016.03.30.)호에 의거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의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흡연단속(과태료 부과) 실시함

####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개시일 : 2020년 1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4. 고시방법 : 구보,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560-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서구 관내 도시공원 지정 : 2개소

연번	구분	공원명	주소	면적(㎡)
1	도시공원	석남원충녹지	인천 서구 석남동 219-4	109,383
2	도시공원	가좌원충녹지	인천 서구 376-1	79,439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79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9. 30.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청동로 87-1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09.3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09-3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87-1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48-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07번길 26-3 (석남동)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5-22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181번길 3-11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2-15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6번길 10-9 (원창동)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2,0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6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4번길 17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1571호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입안(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9. 9. 30.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입안(안) 주요내용

가. 시설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3-686호선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번지 일원
- 내용: 도로(중로3-686호선) 결정(신설)
- 규모: L=166, B=13m

나. 입안내용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686	13	집산도로	166	경서동 372-6번지	대로1-66호선	일반도로	-	-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중로 3-686	○도로 신설 -L=166m, B=13m	· 산업단지 조성 시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현황도로를 정비·확폭하여 진입도로 개설

####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 편입 토지조서

□ 시설명 : 중로3-686호선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또는칭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계			-	2,207						
1	서구 경서동	-	-	-	2,207	-	-	-	-	-	지적 및 지번 미지정 (미등록)

## 의견서

일 시	2019. . .
성 명	
주 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 락 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중3-686호선) 결정(신설)
<b>의견사항</b>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158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
3.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통합지원본부 설치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 단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제3조)
  -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9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 재난현장 자원 동원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재난현장의 출동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4조)
  -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제16조)
  - 재난현장의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현장상황과약 및 통보, 현장통제, 통신망 확보, 자원봉사활동, 통합지원본부 철수, 권한의 위임 등 규정(안 제17조~제23조)

####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2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안전총괄과
- 전화/팩스 : 032-560-4701 / 032-560-2735
- 이 메 일 : yi1256@korea.kr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통합지원본부 설치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 단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제3조)
-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9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 재난현장 자원 동원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재난현장의 출동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4조)
-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제16조)
- 재난현장의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현장상황과악 및 통보, 현장통제, 통신망 확보, 자원봉사활동, 통합지원본부 철수,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제23조)

## 3. 참고사항

- 개 정 안: 불임참조
- 관계법령 발췌: 불임참조
- 예 산 조 치: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 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

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단·실·관·과·소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단·실·관·과·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단·실·관·과·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단·실·관·과·소가 없을 경우 안전총괄부서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③ 재난현장에 현장대응반을 즉각 투입하기 어려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지역의 관할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 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3절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

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절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전환

**제17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 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4.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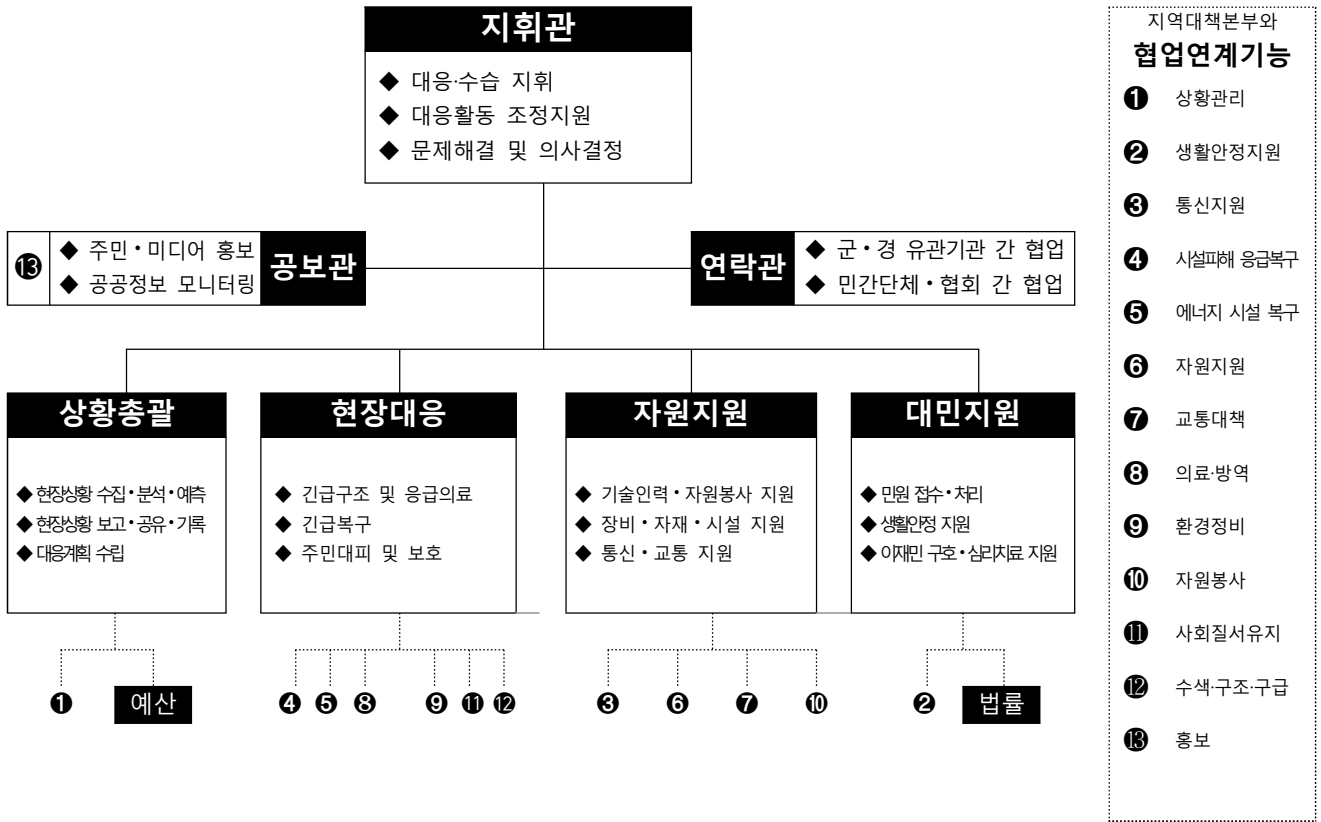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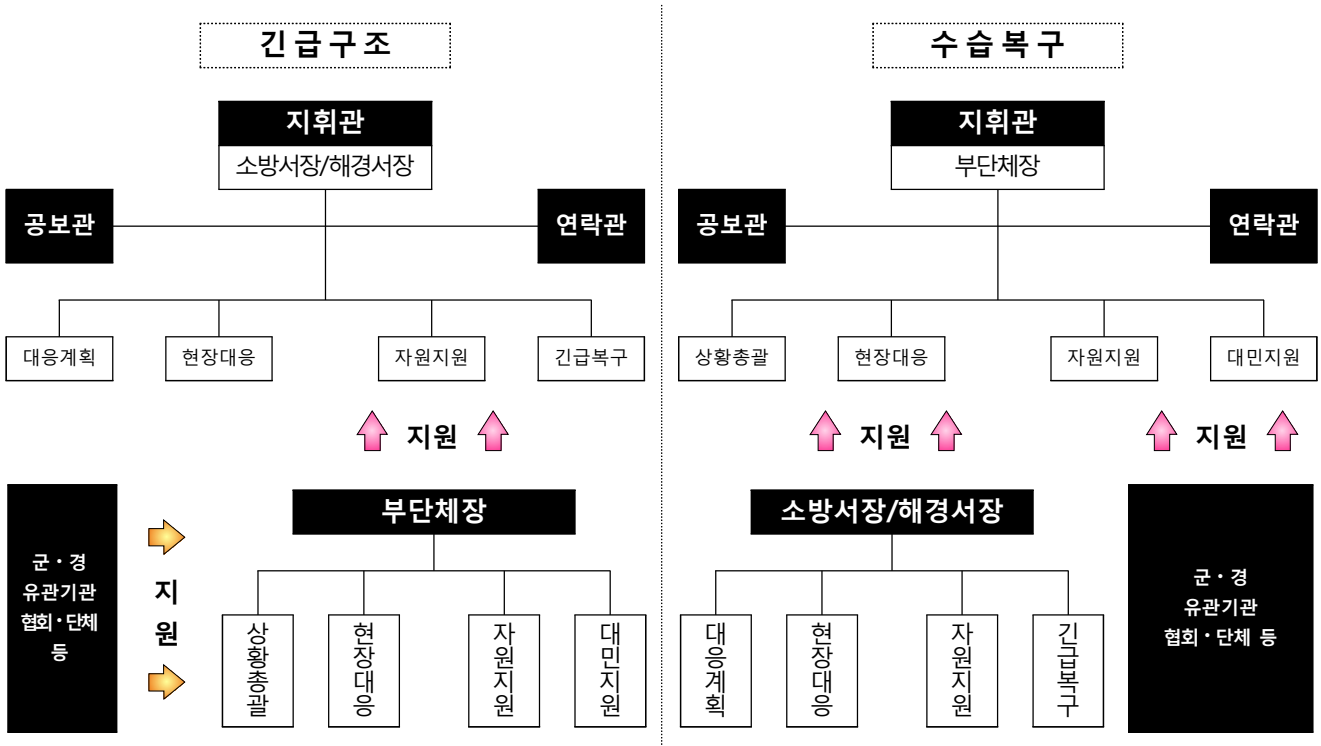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제7조 관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지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대응·수습 총괄</li> <li>•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li> <li>•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li> </ul>
공 보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미디어 홍보</li> <li>• 공공정보 모니터링</li> <li>• 대응단체 정보공유</li> </ul>
연 락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li> <li>•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li> </ul>
상 황 총 괄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지원본부 운영</li> <li>•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li> <li>•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li> <li>•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 수립</li> <li>•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 보고</li> </ul>
현 장 대 응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응급복구</li> <li>• 에너지 복구</li> <li>•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li> <li>• 환경정비</li> <li>• 사회질서 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li> </ul>
자 원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통신 지원</li> <li>• 현장대응 자원 지원</li> <li>• 교통대책</li> <li>• 자원봉사 지원</li> </ul>
대 민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li> <li>• 생활안정지원</li> <li>• 이재민구호·심리 지원</li> <li>• 장례 지원 등</li> </ul>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158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9.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사유

각종 개발사업 시행 전에 재해저감 대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영향 평가 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
- 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내용을 반영,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설치하는 자문위원회로 정비(안 제1조)
- 다.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2조)
-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원 수 및 위원의 자격 구체화(안 제3조)

- 마. 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6조)
- 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등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안 제8조)
- 사. 위원회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제11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 전화 : 560-4701, 팩스 : 560-2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안전총괄과
- 전화/팩스 : 032-560-4701 / 032-560-2735
- 이 메 일 : yi1256@korea.kr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개정 이유

각종 개발사업 시행 전에 재해저감 대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안 제명)
-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원 수 및 자격 구체화 (안 제3조)
- 다. 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6조)
- 라. 「재해영향평가심의회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등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을 구체화(안 제8조)
- 마. 위원회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불임참조
- 나. 관계법령 발췌 : 불임참조
-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 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 등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8조에 따른 심의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현지 조사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발췌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19. 4. 1.)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⑦ <생략>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해영향평가심의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 ⑤ <생략>

⑥ 재해영향평가심의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 ⑧ <생략>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